



## 보 도 자 료

배 포	2020. 5. 11.(월)
담 당 과	마스크총괄반 수급지원팀
과 장	신 준 수 (☎043-719-3302)
서 기 관	유대 규(☎043-719-3316)

## 5월 11일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 발표

오늘 총 913만 2천개 공급

- 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5월 11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 되는 마스크 수급 상황을 발표하였습니다.
  - 오늘(5.11.)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913만 2천개입니다.

(단위: 만 개)

구분	총계	일반 공급			우선 공급	
		약국	하나로마트	우체국	의료기관	기타
5.11.(월) 공급예정량	913.2	706.1	10.3	11.9	184.9	-

- □ 오늘(5.11.)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는 전국의 <sup>1</sup>약국과 <sup>2</sup>농협하나로 마트(서울·경기 제외), <sup>3</sup>우체국(대구·청도 및 읍·면 소재)입니다.
  -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'월요일'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'1·6'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, 주 1회·1인 3개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.
- □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\*를 모두 갖추어 대리구매자 또는 대리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할 수 있습니다
  - ※ 전체 대리구매 대상자, 대리구매자 및 구비 서류는 <첨부> 참조







- □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,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,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.
  - 또한 **손 씻기** 등 **생활수칙**을 잘 지키면서 **기침** 등 **호흡기 증상**이 있거나 **의료기관 방문** 시에는 **마스크**를 반드시 **착용**하시기 바랍니다.

<첨부>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







## 공적마스크 대리구매 대상 및 지참 서류

대리구매 대상자	대리구매자	지참 서류		
❶ 1940년 이전 출생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		
❷ 2002년 이후 출생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		
❸ 장애인	제한 없음	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(장애인복지카드) 또는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증명서 * 장애인등록증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구매대상자의 공인신분증 함께 제시		
<b>4</b> 임신부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 ③ 임신확인서(요양기관 발급)		
⑤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	제한 없음	①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(장애) 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		
<b>③</b> 요양병원 환자	요양병원 종사자	① 해당 요양병원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해당 요양병원장 발급) ② 해당 요양병원 환자의 공적마스크 구매 및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(해당 요양병원장 발급)		
7 병원(요양병원 포함) 입원환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 ③ 입원확인서(해당 의료기관 발급)		
	요양시설 종사자	① 해당 요양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(해당 요양시설장 발급) ② 해당 요양시설 입소자의 장기요양인정서		
③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	주민등록부상 동거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	①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 ② 대리구매 대상자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(동거 확인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 확인) ③ 장기요양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		

\* (외국인)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'외국인등록사실증명'을 마스크 판매처에 제시하면, 동거 가족(대리구매대상자)의 공적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





